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심사보고서

2015. 9. 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8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198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9월 3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일자리진흥과장 임태순

가.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의 대안경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교류확산을 통해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참여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협의회명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 2) 구성기관 : 37개 기초자치단체
- 3) 구성형태 :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인적구성 : 회장 1, 수석부회장 1,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장
 - 권한 : 안건 토의 및 표결권
- 분과위원회 : 사회적·마을기업분과, 자활기업분과, 협동조합분과
- 실무협의회 : 중앙실무협의회, 권역별 실무협의회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3.3.20일 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2015. 8월 현재 전국기초자치단체 37개(서울시 12개)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협의회 주요 내용
 - 가. 협의회명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 나. 구성기관 : 37개 기초자치단체
 - 다. 구성형태 :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인적구성 : 회장 1, 수석부회장 1,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장
 - 분과위원회 : 사회적·마을기업분과, 자활기업분과, 협동조합분과
 - 실무협의회 : 중앙실무협의회, 권역별 실무협의회
 - 주요 협의사항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등

라. 동 규약안은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협의회 기능)에서는 협의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중장기 발전계획,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에서는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사회적·마을기업 분과위원회,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협동조합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는 해당 기관·단체 실무급인사와 소속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 안 제12조(자문위원회 설치)에서는 협의회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사람,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장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할 사람,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함.
- 안 제13조(실무협의회 등)에서는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중앙실무협의회는 권역별부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는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함.
- 안 제14조 ~ 15조(수당, 경비부담 등)에서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협의회 공동사무와 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함.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 2012. 08. 31 : 협의회 설립 8개 자치단체 공동제안
 - ※ 완주군, 금천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시흥시,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 2012. 09. 04 : 협의회 설립 제안(성북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 2012. 10. 18 : 참여 기초자치단체 확정 (30개 지자체)
 - ※ 서울·인천·경기 17개, 강원권 1개, 충청권 4개, 호남권 5개, 경상권 3개
- 2012. 11. 09 : 협의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준비모임
 - 규약안 의견수렴 및 확정
 - 임원 구성안 및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 등 논의
- 2013. 3. 20 : 협의회 설립
 - 사무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서울사회혁신파크 내
 - 가입단체 : 전국 37개 기초자치단체
 - 【서울(12) : 관악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 【인천(3), 광주(3), 강원(1), 대전(2), 충남(3), 경기(8), 전북(2), 전남(3)】
- 2015. 9월 ~ : 협의회 참여 시·구 지역의회 의결 및 고시

○ 검토의견으로는

본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

- 최근 사회가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사회갈등이 깊어지고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국가 및 기업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정책에서 이제는 사회적 경제 기업가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회적경제학교를 운영하고 전통시장 체험교육 사업 등 특화사업도 활성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로 사회적경제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많은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시에 유럽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최초 도입한 이래 2000년 자활공동체, 2007년 사회적기업, 2010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순차적으로 등장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는 1,350여개의 (예비)사회적기업, 1,249개의 마을기업, 7,208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마포구도 38개의 사회적기업, 11개의 마을기업, 145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례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특성과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는 좋은 사례로서 최근에는 관련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더 많은 사회적 경제 사업체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전국의 37개 자치단체가 협의회 회원에 가입하여 지방정부간 사회적경제 현장의 생생한 사회경제적 기업 활성화 경험과 노하우를 활발하게 교류하고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에 대해 공동 건의하는 등 상호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음.

- 서울시 및 8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했으나, 자치구 여건상 센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육성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관련 조례인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은 물론 2015년도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1,000만원을 본 예산에 책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마포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은 현재 194개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많고 활성화 되어있으며 특히 홍대앞이 이번에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예비 특구지역’으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5,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마포구와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이 의욕적으로 9월부터 민·관 협력으로 ‘문화예술 관광·체험 비즈니스 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홍대의 문화와 가치를 느낄 수 있고 홍대에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마을기업인 (가)홍대앞 문화관광여행사 설립이 추진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

- 그러나 마포구가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전국에서 최고 많지만 일부 사회적경제적 기업의 경우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스스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구로부터 인건비 등 자금지원만 보조받고 제품개발이나 판매에는 소홀하

여 자금지원이 끊기면 문을 닫는 부실 사회경제적 기업이 있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부 및 타 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험이나 성공사례 등 신속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으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으로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그 동안 투입된 예산으로 어느정도 제품개발이나 상품 판매실적 등 성과가 있는 지 점검해 보고 점검결과 경쟁력있는 우수기업에게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고 부실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